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및 경기)	그 밖의 지역
식 품	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의 약 품	연간 생산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연간 생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의료기기	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의약외품	연간 생산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연간 생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